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대학교 (이하 “본교” 라 한다)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교내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대학 및 부속기관 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모든 연구실에 적용된다. <개정 2019.5.2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란 본교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을 갖추어 설치한 실험실·실습실·실험준비실을 말한다. <개정 2019.5.21.>
2. “안전관리대상기관”이란 본교에서 교직원, 대학(원)생, 연구원이 실험·실습 및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실험·실습실, 연구실 소속 기관으로 대학(원), 연구소, 센터 등을 말한다.
3. “안전관리총괄자”란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자로 총장을 말한다. <개정 2019.5.21.>
4. “안전관리책임자”란 연구실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총괄자의 지휘를 받아 해당 연구실 전체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리하는 자로 안전관리대상기관의 대학(원)장, 연구소장, 센터장, 관장 등을 말한다.
5. “연구실책임자”란 해당 연구실에서 연구업무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6. “안전관리담당자”란 각 연구실별로 지정되어 해당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연구활동종사자”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8. “안전관리부서”란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를 주관하는 행정조직을 말한다.
9. “안전환경관리자”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거나 각 연구실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에게 지도·조언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10.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9.5.21.>
11.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

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9.5.21.>

12.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5.21.>

13. “중대 연구실사고”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 <신설 2019.5.21.>

14.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 <신설 2019.5.21.>

15.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5.21.>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확보) 총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장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5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본교 연구실의 안전 확보와 교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실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각종 유해물질의 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3. 연구실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기점검 및 수시 점검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신·개축 연구실 안전설비 확보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6. 안전관리 위반 연구실 및 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7.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실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과 간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교학부총장, 사무처장, 안전관리부서장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편

성 부서장 <개정 2018.8.1., 2019.5.21.>

2. 전문분야위원: 연구활동종사자 중 교학부총장이 임명하는 자

3.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개정 2019.5.21.>

② 위원회에는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분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이 되며, 간사는 시설과장이 되고, 회무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8.2.1., 2019.5.21>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조직과 직무

제8조(연구실책임자의 임무) 안전관리대상기관의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의 안전관리 업무를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5.21.>

1.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2.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개정 2019.5.21.>

3.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4. 각종 유해물질 및 실험폐기물관리

5. 연구실 위험요인 사전보고 및 안내(독성 및 발암물질 등 유해위험물질) <신설 2019.5.21.>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제9조(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연구실책임자는 소속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② 안전관리담당자는 정.부 2인을 둔다. 안전관리담당자 “정”은 해당 연구실의 담당교수 또는 지도교수가 되며, 안전관리담당자 “부”는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안전관리담당자 “정”의 추천으로 안전관리책임자가 임명한다.

③ 안전관리담당자(부)는 3개 이상의 연구실 지정을 할 수 없다.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유지관리

2. 연구실 사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3.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4.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5. 실험폐기물 분별수집 및 폐기의뢰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업무

제10조(안전관리부서) 연구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시설과로 한다. <개정 2018.2.1., 2019.5.21.>

제11조(안전환경관리자) ① 총장은 안전환경관리자 3명을 지정하여야 하며, 그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② 안전환경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5.21.>

1.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지도·조언
4.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안전관리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자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5.21.>

1. 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제4장 안전관리

제12조(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담당 연구실에서 배출된 실험폐액 등을 성실히分別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실험폐액 등은 시설과장에게 그 처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실험폐액 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

제13조(연구실 안전점검 등) ① 안전관리담당자는 담당 연구실에 대하여 매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부서는 연구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검출함과 동시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교육 등) ① 안전관리부서는 매 학년도마다 안전관리대상기관의 조교 및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연구실 안전사고예방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대상기관의 실험·실습 수업을 포함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조교 및 대학(원)생 등은 안전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③ 총장은 안전교육 이수자에게 이수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결과를 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안전관리책임자는 미 이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연구실 특성에 맞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마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연구실 자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자체안전교육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부서는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총장은 안전교육·훈련 미이수자에 대하여 성적미열람 및 연구실 출입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제15조(행정조치 등) ① 위원회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연구실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②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안전점검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책임자는 총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제5장 사고처리 및 조치

제16조(사고 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 등) ① 연구실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부서 주관 하에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여 그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확산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② 연구실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의 책임자는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사고 상태를 변경 및 훼손 없이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1.>

③ 중대 연구실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명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9.5.21.>

제17조(안전관리 기록·보존) 안전관리책임자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담당자 임명에 관한 사항
2. 연구실 안전점검표
3. 연구실 학기별 안전점검보고서
4. 연구실 자체 안전교육기록부
5. 연구실 안전사고보고서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준용) 그 밖에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서 실험·실습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425호, 2007.8.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10.2.26.>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5호, 2015.4.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5호, 2018.2.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0조와 제12조제1항 중 “시설팀장”을 “시설과장”으로, “시설팀”을 “시설과”로 한다.

부칙 <제876호, 2018.8.1.>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제5항14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인천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부총장”을 “교학부총장”으로 “대학건설본부장”을 “사무처장”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898호, 2019.5.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